|  |  |  |
| --- | --- | --- |
| **납세자의 타 지역 증치세 예납 관련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6]7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영개증” 시범 전면추진 후 증치세 정책조정 상황에 근거, 납세자 타 지역 증치세 예납과 관련된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정책 집행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납세자가 지역을 벗어나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판매와 임대를 할 경우, 건설서비스 발생지 및 부동산 소재지에서 증치세를 예납하여야 할 경우 증치세 예납세액을 과세근거로 증치세를 예납한 소재지의 성시유호건설세 적용세율과 교육비부가 징수율에 따라 현장에서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2. 증치세를 예납한 납세자가 그 기구 소재지에서 증치세 납부신고를 할 경우 그 실제 납부한 증치세 세액을 과세근거로 기구 소재지의 성시유호건설세 적용세율과 교육비부가 징수율에 따라 현장에서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3. 본 통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7월 12일 |  | **关于纳税人异地预缴增值税有关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16]7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全面推开“营改增”试点后增值税政策调整情况，现就纳税人异地预缴增值税涉及的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政策执行问题通知如下：  　　一、纳税人跨地区提供建筑服务、销售和出租不动产的，应在建筑服务发生地、不动产所在地预缴增值税时，以预缴增值税税额为计税依据，并按预缴增值税所在地的城市维护建设税适用税率和教育费附加征收率就地计算缴纳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  　　二、预缴增值税的纳税人在其机构所在地申报缴纳增值税时，以其实际缴纳的增值税税额为计税依据，并按机构所在地的城市维护建设税适用税率和教育费附加征收率就地计算缴纳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  　　三、本通知自2016年5月1日起执行。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6年7月12日 |